

■ 김성곤 해사법규 [이론서] 정오표 (2020년 1판) □ 2020. 6월까지 개정된 법령 + 수산업법 (8.28시행예정 포함)

페이지	법종류	줄 수	오	정
22	선박법	밑에서 6째줄 ▶ 삽입	■선적항을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정할 수 있는 경우	
25		위에서 13째줄 ▶ 개정 삽입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7	선박 안전법	위에서 첫째줄 ▶ 개정20.6.17	2.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해당 선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해당 선박의 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2.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선박 정비, 화물관리, 안전관리 등 해당 선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회사의 소
		위에서 3째줄 ▶ 개정20.6.17	3. 시험·조사·지도·단속·점검·실습 등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자	3. 시험·조사·지도·단속·점검·실습 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위에서 11째줄 ▶ 개정20.6.17	9. 여객선에 적재가 곤란한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운송차량, 혐오감을 주는 가축운송차량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를 포함한다) 가.「축산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 나.「동물보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다. 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여 살아 있는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 라.「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또는 가연성 물질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 2020. 12.18부터 시행

37	<p>☑ <신설>개정 20.6.17</p>	<p>10. 해당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 3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p>	
40	<p>표에서 밑에서 1째줄 ☑ 개정20.6.17</p>	<p>1.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u>아니하는</u> 자</p>	<p>1.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u>않는</u> 사람</p>
	<p>표에서 ☑ 개정20.6.17</p>	<p>가. 정박 중에 선내 관람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 하역·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선원 교대자 등 해당 항에서만 승선하는 자</p>	<p>가. 선내 관람과 관련하여 승선하는 사람, 하역·수리작업·해상공사 등을 위한 작업원 또는 선원 교대자 등으로서 해당 선박의 정박 중에만 승선하는 자</p>
41	<p>표에서 ☑ 개정20.6.17</p>	<p>2. 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u>적재한</u>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제외하고 산정</p>	<p>2. 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u>실은</u>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제외하고 산정</p>
64	<p>☑ <신설> 개정20.6.17 밑에서 1째줄</p>	<p>7 지도·감독 <시행규칙 88조의2></p>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64 조제 1 항 각 호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을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41 조제 2 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을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72	<p>☑ <신설> 개정20.6.17 위에서5째줄 삽입</p>	<p>6 양벌규정 <법제86조의2></p> <p>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80	어선법	밑에서 4째줄 밑에서 1째줄 ❑ 개정20.2.18	개측	재측정
82		위에서 13째줄 ❑ 삽입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를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7		위에서 7째줄 ❑ 개정20.2.18	승선 또는 적재하고	승선시키거나 신고
89	어선법	위에서 7째줄 ❑ 개정20.2.18	기한 내에	기한까지
91		밑에서 3째줄 ❑ 개정20.2.18	건조에 착수한	건조를 시작한
95		밑에서 5째줄 ❑ 개정20.2.18	제한반경	제한 반지름
95		밑에서 1째줄 ❑ 개정20.2.18	개측	재측정
105		밑에서 14째줄 ❑ 개정20.2.18	승선 또는 적재하고	승선시키거나 신고
107	국제선박 등록법	밑에서 첫째줄 ❑ 개정 삭제	<h3>제4장 국가필수국제선박</h3> <p>❑ 제4장 전체 삭제 ▶ 2020.1.16.「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법으로 이동</p> <p>※ 국가필수국제선박에 관계되는 것 모두 삭제되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동</p>	

108		밑에서 첫째줄 ❑ 삭제	<table border="1"> <tr> <td data-bbox="577 204 779 284"> 국가필수국제선박 </td> <td data-bbox="779 204 1630 284">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비상사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으로서 법에 따라 지정된 선박 </td> </tr> </table> <p>❑ 삭제 2020.1.16.</p>	국가필수국제선박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비상사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으로서 법에 따라 지정된 선박
국가필수국제선박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비상사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으로서 법에 따라 지정된 선박				
112		밑에서 5째줄 ❑ 삭제	<p>■ 권한의 위임 <시행령 제10조> 해양수산부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손실보상금의 지급 ❑ 삭제 2020.1.16 3. 손실보상금의 환수 ❑ 삭제 2020.1.16 4.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청문의 실시 6.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2		❑ 115페이지에서 있는 내용 일부 삭제 후 삽입	<p>5 벌칙 및 과태료</p> <p>❶ 벌칙 <법 제12조>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이 인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을 국제선박에서 승무하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❷ 과태료</p> <p>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622 1098 1675 128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조의2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 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td> </tr> </table> <p>②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이 부과·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조의2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 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를 위반하여 국제선박을 운항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조의2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 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13		113페이지 ❑ 전체 삭제	<div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04 국가필수국제선박 </div> <p>❑ 전체 삭제 2020.1.16.되어「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동</p>															
174	선원법	밑에서 13째줄 ❑ 삽입	①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서식 제26호의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및 별지 서식 제27호의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8		위에서 3째줄 다음 ❑ 삽입	4 시효의 특례 <법 제156조>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79		위에서 위에서 3째줄 ❑ 개정20.2.18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87	선박 직원법	5.해기사 다음 줄 ❑ 개정 20. 5.19	<신설>	4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189~ 192		■ 해기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일부 수정됨	[별표 1의3] (시행령제5조의2관련)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1. 항해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받으려는 면허</th> <th colspan="4">승무경력</th> </tr> <tr> <th>자격</th> <th>선박</th> <th>직무</th> <th>기간</th> </tr> </thead> <tbody> <tr> <td>1급</td> <td>2급 항해사</td> <td>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td> <td>선장, 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td> <td>2년</td> </tr> </tbody> </table>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2급 항해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장, 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2급 항해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장, 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	2년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선장, 1등 항해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3년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5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3년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함정의 운항	3년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15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3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선박의 운항			5년		
4급 항해사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장 또는 부장	2년	
			함정의 운항	3년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5년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 또는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4년
	5급 항해사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4년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직원	1년
		총톤수 30톤 이상의 상선	선박직원	1년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직원	2년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상선	선박직원	2년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3년
		총톤수 30톤 이상의 상선	선박의 운항	3년
6급 항해사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1년	
	배수톤수 3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6급 항해사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선박의 운항	1년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선박의 운항	2년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2년
		길이 9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어선	선박의 운항	2년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상선	선박의 운항	3년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	함정의 운항	3년

비고

1. 5급 항해사부터 3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4급 항해사부터 1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

- 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항해사 이하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받으려는 면허가 3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 중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 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고,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 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한다. 다만, 함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 경력 인정에서 모두 인정한다.
 4.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항해선인 상선에서 당직항해사로 승무한 경력은 6개월에 한정하여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5. 5급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급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승무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6.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2007년 11월 23일 이후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부터 인정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7. 자격란 중 운항사는 항해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8.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9.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0.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1. "선박의 운항"이란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기관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또는 1등 운항사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5년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천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기관의 운전	3년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3년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4년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4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장	2년
						기관의 운전	3년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5년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4년
				5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4년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선박직원	1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선박직원	2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6급 기관사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기관의 운전	1년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기관의 운전	2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기관의 운전	3년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의 함정	기관의 운전	3년

비고

- 5급 기관사부터 3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4급 기관사부터 1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기관사 이하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 6급 기관사 면허를 위한 승무시간 중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어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어선에서 승무한 경력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선면허에 한정하여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 자격란 중 운항사는 기관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3. 소형선박 조종사

받으려는 면허	승무경력			
	자격	선박	직무	기간
소형선박조종사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2년

비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8	<p>■ 개정 20. 5.19</p>	<p>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 - - -</p>	<p>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 - - - -</p>
		<p>1.2. (생 략)</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p>	<p>3. 제22조제1항을 - - - - - 대여 하거나 - -</p>
		<p>4. ~ 6. (생 략)</p>	<p>4. ~ 6. (현행과 같음)</p>
		<p>7.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p>	<p><삭 제>되어 제③항으로 개정</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신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면허취소</p> <p>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p> <p>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 면허취소</p>

203~
205

위에서 7째 줄
■ 일부 수정됨

■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별표 3] (시행령 제22조제1항관련)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1.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갑판부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항행구역		선박의 크기 (총톤수)	선박직원	승무자격		
				여객선	여객선 외의 선박	
연안 수역	평수구역	200톤 미만	선장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선장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선장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	200톤 미만	선장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1등 항해사	6급 항해사	-	
		200톤 이상 500톤 미만	선장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5급 항해사
			1등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선장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1등 항해사	5급 항해사	5급 항해사	
		1천6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선장 1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천톤 이상 5천톤 미만		2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3등 항해사	5급 항해사	-		
		선장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5천톤 이상	1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2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등 항해사	4급 항해사	-			
원양수역	200톤 미만	선장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		
200톤 이상	선장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00톤 미만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2등 항해사	4급 항해사	-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	선장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2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3등 항해사	5급 항해사	-
1천600톤 이상 3천톤 미만	선장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1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2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등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3천톤 이상 6천톤 미만	선장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1등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2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등 항해사	4급 항해사	4급 항해사
6천톤 이상	선장	1급 항해사	1급 항해사
	1등 항해사	2급 항해사	2급 항해사
	2등 항해사	3급 항해사	3급 항해사
	3등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비고

- 부선(解船)·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曳船)의 경우 위 표의 승무기준보다 1등급 상위의 자격소지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야 한다.
-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경우 위 표의 최하위 선박직원의 승무기준과 같은 등급 또는 바로 아래 등급의 자격소지자 1명 이상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한다.
- 비고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압항(押航) 예·부선의 경우 예선과 부선의 총톤수를 합산한 톤수로 한 단일선박의 승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한정하여 운항하는 폐기물운반선(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은 연안수역의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으로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 항해사 1명이 추가하여 승무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을 이수한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는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동력요트 중 승객이 13명 미만이고, 총톤수 55톤 미만인 동력요트에서 선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나. 어선

어선의 항행구역	어선의 길이	선박직원	승무자격
제한수역	24미터 미만	선장	6급 항해사
	24미터 이상 45미터 미만	선장	5급 항해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1등 항해사	6급 항해사
	45미터 이상	선장	3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1등 항해사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무제한수역	24미터 미만	선장
24미터 이상 45미터 미만		선장	5급 항해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1등 항해사	6급 항해사
45미터 이상 60미터 미만		선장	4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항해사)
		1등 항해사	5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60미터 이상 80미터 미만		선장	3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항해사)
		1등 항해사	4급 항해사(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항해사)
		2등 항해사	5급 항해사
80미터 이상		선장	2급 항해사
		1등 항해사	3급 항해사
		2등 항해사	4급 항해사
		3등 항해사	5급 항해사

비고

- 총톤수 2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1등 항해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총톤수 2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 항해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소형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기관부의 승무기준

가. 어선 외의 선박

선박의 항행구역	주기관 추진력	선박직원	승무자격
----------	---------	------	------

연안 수역	평수구역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5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4급 기관사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5급 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1등 기관사	6급 기관사	
			기관장	4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	
			기관장	3급 기관사	
		원양수역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4급 기관사
				1등 기관사	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4급 기관사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3급 기관사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		
	2등 기관사		5급 기관사		
	기관장		2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6천킬로와트 미만	1등 기관사		3급 기관사		
	2등 기관사		4급 기관사		
	3등 기관사		5급 기관사		
	기관장		1급 기관사		
6천킬로와트 이상	1등 기관사	2급 기관사			
	2등 기관사	3급 기관사			
	3등 기관사	4급 기관사			
	기관장	3급 기관사			

비고

1. 기관의 운전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중 전자기관사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국가기술훈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전자기사 또는 전자기기에 관한 전자기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3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영해만을 항행하는 예선 또는 연안여객선으로서 선박의 통상적인 항행시간(최근 6개월간 각 항차당 항행시간이 가장 긴 순서부터 차례로 6회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시간)이 10시간(연안여객선은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근해구역에 지정된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을 한정하여 운항하는 폐기물 폐기물운반선(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은 연안수역을 승무기준을 적용한다.
4. 부산·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으로서 해당 예선의 크기가 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는 1등 기관사가 승무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안전교육을 이수한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는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요트 중 승객이 13명 미만으로서 총톤수 55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미만인 동력요트에서 기관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나. 어선

어선의 항행구역	주기관 추진력	선박직원	승무자격
제한수역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 (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기관사) 6급 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4급 기관사 (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1등 기관사	3급 기관사 5급 기관사
무제한수역	75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총톤수 200톤 미만은 6급 기관사) 6급 기관사
	750킬로와트 이상 1천500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1천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	기관장 1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급 기관사 (총톤수 500톤 미만은 5급 기관사) 4급 기관사 (총톤수 500톤 미만은 6급 기관사) 5급 기관사
	3천킬로와트 이상	기관장	2급 기관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10%;">1등 기관사</td> <td style="width: 10%;">3급 기관사</td> <td style="width: 30%;"></td> </tr> <tr> <td></td> <td></td> <td>2등 기관사</td> <td>4급 기관사</td> <td></td> </tr> <tr> <td></td> <td></td> <td>3등 기관사</td> <td>5급 기관사</td> <td></td> </tr> </table>			1등 기관사	3급 기관사				2등 기관사	4급 기관사				3등 기관사	5급 기관사		
		1등 기관사	3급 기관사																
		2등 기관사	4급 기관사																
		3등 기관사	5급 기관사																
209	밑에서 2째줄 ■ 개정 20. 5.19	제21조(해기사 실습자의 실무수습) 선박소유자는 제11조에 따라 승무하는 선박직원 외에 실무수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승선시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현장승선실습을 위탁하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209	밑에서 2째줄 ■ 개정 20. 5.19	<신설>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의무 2. 현장승선실습수당 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5. 현장승선실습 결과의 평가 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0	위에서 1째줄 ▶ 개정 20. 5.19	빌려 주거나		대여하거나
210	위에서 3째줄 ▶ 개정 20. 5.19	<신설>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11	위에서 16째줄 6. 다음 ▶ 개정 20. 5.19	<신설>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8.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한 사람
211	밑에서 8째줄 ▶ 개정 20. 5.19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자의 승선 및 실무수습을 거부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사람		제29조(벌칙)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2	▶ 개정 20. 5.19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	제31조(과태료) ① - - - - - 500만원 - - -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p>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p> <p>2.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신 설></p>	<p>아니하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p> <p>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p> <p>② - - - - - 300만원 - - - - -</p> <p>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p> <p>2.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218	해사안전법	위에서 12째 줄 ▶ 교체	㉓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㉓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국회제출 등
222		밑에서 1째 줄 ▶ 개정 2020.6.4	<신설>	제9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신청 등)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작업)허가

				<p>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2.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5만분의 1 이상 축척의 해도를 말한다) 3.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p>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p> <p>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로표지의 설치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를 한 구난작업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 및 해사안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업무
267	<p>밑에서 8째줄  이동</p>	<p> 음향신호설비  위에서 5째줄 표 위로 이동</p>		
231	<p>위에서 7째줄  개정 2020.6.4</p>	<p>제29조(자료기록장치 등) 법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설비기준에서 정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를 말한다.</p> <p><신 설></p>	<p>제29조(자료기록장치 등) 법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항해자료기록장치 	

				<p>2.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p> <p>3.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p>
234	위에서 15째줄 ▶개정 2020.6.4	<신 설>		<p>제31조의2(음주측정 세부절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측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p> <p>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신원 확인</p> <p>2.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104조의2제3항 또는 제107조제2호의4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의 고지</p>
234	위에서 15째줄 ▶개정 2020.6.4	<신 설>		<p>제31조의3(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p> <p>① 해양경찰청장은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의 검정 또는 교정을 해야 한다.</p> <p>② 해양경찰청장은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결과를 출력·관리해야 한다.</p>
276	위에서 4째줄 ▶ 삭제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p> <p>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p>	<p>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삭제</p> <p>2. 삭제</p>

276		위에서 4째줄 ■신설 ■시행 2020.5.19	<p>제104조의2(벌칙) 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p>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75		위에서 12째줄 ■개정 2020.6.4	<p><삭 제></p> <p>5. 법 제110조 제3항 제15호, 제15화의2 및 제15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285	선박입출항법	위에서 1째줄 ■시행 2020.5.19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 ① (생략)</p> <p>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외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양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의 선장은 출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무원 명부 2. 승객 명부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외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삭 제></p> </td> </tr> </table>	<p>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 ① (생략)</p> <p>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외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양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의 선장은 출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무원 명부 2. 승객 명부 	<p>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외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 ① (생략)</p> <p>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외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양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의 선장은 출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무원 명부 2. 승객 명부 	<p>제3조(선박 출입 신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외항선의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항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삭 제></p>				

287		밑에서 1째줄 ❑ 개정	2.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89		밑에서 9째줄 ❑ 개정	①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305		위에서 1째줄 ❑ 개정	1 등화의 제한	1 불빛의 제한
306		밑에서 11째줄 ❑ 수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령에 위반이 있을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
308		밑에서 6째줄 ❑ 삽입	해양경찰청장은 교통관제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시행령 제22조 2항>	
310		위에서 5째줄 ❑ 개정	9.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항로에 방치한 자	9.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항로에 내버려 둔자
320	도선법	밑에서 3째줄 삽입 ❑ 2020.5.15. 개정	<신설>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321		밑에서 11째줄 ❑ 2020.5.15. 개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생략)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 - - - - - - - - - 제1호, 제2호의2 또는 - - - - - - - - - - 1. - - - - - 밝혀진 - -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25		위에서 4째줄 ☑ 삭제	3.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3.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28 331		밑에서 14째줄 ☑ 2020.5.15. 개정 밑에서 7째줄	공익상 수행상	공익을 위하여 수행을 위하여
334		밑에서 12째줄 ☑ 삭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역항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방관리무역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336		위에서 6째줄 삽입 ☑ 2020.5.15. 개정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신 설>	제39조의2(벌칙) - - -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도선사 명의를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345	해심법	■ 결격사유 ☑ 삽입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45	밑에서 9째줄 ☑ 수정	5 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5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350	위에서 9째줄 ☑ 삽입	② 특별조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관 중에서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56	밑에서 9째줄 ☑ 개정	②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361	밑에서 2째줄 ☑ 개정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고·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9	밑에서 1째줄 ☑ 삽입	5 공시송달 ① 주소를 모르거나 통지 등의 대상자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통고·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통고·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실는 것으로 통고·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시행령 제77조 1항> ② 관보에 실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통고·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77조 2항>							
376~449	☑시행 2020.9.25. 시행	<table border="1"> <tr> <th>교재 페이지</th> <th>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th> <th>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시행 2020.9.25. 시행</th> </tr> <tr> <td>376</td> <td>제3조(적용범위) ①·② (생략) ③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2조,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td> <td>제3조(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 까지, 제41조의4- - - - - -</td> </tr> </table>	교재 페이지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시행 2020.9.25. 시행	376	제3조(적용범위) ①·② (생략) ③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2조,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 까지, 제41조의4- - - - - -	
교재 페이지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시행 2020.9.25. 시행							
376	제3조(적용범위) ①·② (생략) ③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2조,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 까지, 제41조의4- - -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384	<p>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려는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배출률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① -----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p> <p>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p>	
	389	<p>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저장·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폐기물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해양수산부령으로 ----- 소유자----- 해양수산부령으로 ----- 해양수산부령으로 -----</p> <p>-----</p> <p>② (현행과 같음)</p>	
	395	<p>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 이상을</p>	<p>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으로 -----</p> <p>-----</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p> <p>----- 1명 -----</p> <p>-----</p>	

		<p>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395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생략)</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자격·업무내용·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업무내용·준수사항 - - - - -</p>	
		<p>398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p> <p>②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해양시설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p>	<p>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해양수산부령으로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 - - - -</p> <p>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해양시설-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 - - - -</p>	

		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399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선박(항해 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1항에 따라 모두 수거·처리한 선박에 한정한다) 6. 해체 중인 선박	
	405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① ----- -----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 ----- 사용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가동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2.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	

			<p>405 ②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06 ③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p> <p><신 설> <신 설></p> <p><신 설></p> <p>406 <신 설></p>	<p>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의 인근 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p> <p><삭 제></p> <p>③-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같은 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한 경우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p>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	--	--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료유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406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1.2. (생략) ②·③ (생략)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 - - - - 대통령령으로 - - - - - 제44조제1항에 따른 - - - - -.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406	④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건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신설> <신설> ⑤·⑥ (생략)	④- - - - -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 -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 - - .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⑤·⑥ (현행과 같음)	
408	제48조(적용제외)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7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신설>	제48조(적용제외)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4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	

		<p>415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이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의 교체·개조·변경·수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 - - - - - -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등이 - - - - -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기술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 - - - - - - - - - -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415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항만·항구 또는 연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및 선박에너지효율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및 선박에너지효율 관련 설비 등의 교체·개조·변경·수리·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p>	<p>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①- - - - - - - - - -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외국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또는 선박에너지효율- - - - - - - - - - 기술상의 기준 또는 황함유량 - - - - -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연료유 또는 선박에너지효율 - - - - -</p>	
		<p>423 <신 설></p>	<p>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p>	

		<p>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의 자격, 구성·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425	<p>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① ~ ③ (생략)</p> <p>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작성방법·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64조에 따라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p> <p>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작성방법·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429	<p>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①처분기관은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p> <p>1. ~ 8. (생략)</p> <p><신설></p>	<p>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①-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8의2.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p>	

			<p>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p> <p>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p>9. (생략) ② ~ ⑤ (생략)</p>		
	437	<p>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① (생략)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작업계획이 미흡하거나 동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1항- - - - - - 미흡하거나 그 - - - - - - . ③ (현행과 같음)</p>	
	438	<p>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p> <p>1. ~ 1의3. (생략) <신설></p> <p><신설></p> <p>2. ~ 5. (생략)</p>	<p>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①- - - - - - - - - - - - - - - .</p> <p>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5.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2.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④ (생략)</p> <p>441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해양수산부장은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관리인 또는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소속 관계 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계 직원이 승선 중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 해양수산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2.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3.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4. 그 밖에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과정으로 해양수산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p>	
		<p>제123조(위임 및 위탁) ①·② (생략)</p> <p>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및 정기적인 해양환경의 측정 2.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제공 및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관리 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 6.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7.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관시설의 설치·운영 8.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설치·운영 9. 제121조제1항에 따</p>	<p>제123조(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의 운영</p>	
447	<p>제1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5. (생략)</p> <p>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p> <p><신설></p> <p>7. ~ 13. (생략)</p> <p>② (생략)</p>	<p>제129조(벌칙) ①- - - - -</p> <p>-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제44조제1항- - - - -</p> <p>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한 자</p> <p>7. ~ 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449	<p>제132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2.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의2. ~ 12. (생략)</p> <p>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물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p>	<p>제13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해당하는 자에게- - - - -</p> <p>- -</p> <p>1. (현행과 같음)</p> <p>2. 제33조제1항- - - - - 신고 또는 변경신고- - - - -</p> <p>- - - -</p> <p>2의2. ~ 1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해당하는 자에게- - - - -</p> <p>- - - - - .</p> <p>1. 제22조의2제1항을 - - - - -</p> <p>- 배출물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 - - - -</p>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 5. (생략)

6. 제3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2. ~ 6의6. (생략)

6의7.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6의8.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 5. (현행과 같음)

6. 제32조제2항에 따른 - - - - -
- - - - -

6의2. ~ 6의6. (현행과 같음)

6의7.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8.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9.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10.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11.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6의12.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p>7. ~ 15. (생략) <신설></p> <p>16.17. (생략) <신설></p> <p>18. (생략)</p> <p>19. 제12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7. ~ 15. (현행과 같음)</p> <p>15의2.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한 자</p> <p>16.17. (현행과 같음)</p> <p>17의2. 제76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8. (현행과 같음)</p> <p><삭제></p>	
<p>부칙 <제17110호, 2020. 3. 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8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부칙 제5조제5항 중 "제72조제4항"을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으로 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488	수상 구조법	<p>위에서 6째줄</p> <p>☑ 수정</p>	<p>③ 해양경찰청장은 보수교육을 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 제30조의7 3항></p>	<p>③ 해양경찰청장은 보수교육을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 제30조의7 3항></p>
497		<p>위에서 12째줄</p> <p>☑ 삭제</p>	<p>④ 정당한 사유 없이 법 구조본부의 장</p>	<p>④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본부의 장</p>
527	연안사고 예방법	<p>밑에서 14째줄 다음</p> <p>☑2020.2.18시행</p>	<p>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 ③ (생략)</p> <p>④ 해양경찰서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⑤ 해양경찰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p> <p>⑥ 해양경찰서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529	<p>밑에서 12째 줄</p> <p>☑ 삽입</p>	<p>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p> <p>가. 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나. 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22구조대의 구조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다. 해양경찰청합정(100톤 미만의 함정으로 한정한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p> <p>2. 다음에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가 있는 사람일 것</p> <p>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p> <p>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일반조종면허</p>	
531	<p>위에서 2째 줄</p> <p>☑ 수정</p>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
536	<p>밑에서 4째 줄</p> <p>☑ 개정 및 신설</p> <p>2020.2.28개정</p>	<p>11. 패들보드(물에서 노를 저어 움직이게 하는 길고 좁은 형태의 보드를 말한다)</p> <p>12. 그 밖에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p>	
537	<p>위에서 6째 줄 밑에 삽입</p> <p>☑ 개정 및 신설</p>	<p>■ 시행규칙 제1조의2(정의)</p> <p>"해양수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2. 28.></p> <p>1. 시행규칙 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즉 7. 수면비행선박 8. 수륙양용기구 10. 물추진형 보드</p>	

	2020.2.28개정	2.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수시로 부착 또는 분리할 수 있는 것	
538	밑에서 3째줄 [개정] 2020.2.28개정	2. 조종기간: 국제경기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대회 기간 까지	2. 조종기간: 국제경기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10일까지
540	위에서 10째줄 [개정] 2020.2.28시행	일간신문에 신고,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일간신문에 신고,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545	위에서 7째줄 [개정] 2020.2.28시행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두는 안전교육 강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546	위에서 8째줄 [개정] 2020.2.28시행	① 조종면허증을 갱신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종면허증 갱신기간연기(사전갱신)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의4 1항> ② 조종면허증 ③ 조종면허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조종면허증 갱신기간연기(사전갱신)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의4 1항> <개정 2020. 2. 25.> ② 면허증 ③ 면허증 [개정] 이하 조종면허증 ▶면허증으로 개정
546	밑에서 6째줄 [개정] 2020.2.28시행	① 조종면허증을 미리 갱신받으려는 사람은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시작일 전에, 갱신기간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연기(사전갱신)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제4조의4>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미리 갱신하려는 사람은 면허증 갱신 기간 시작일 전에, 갱신기간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연기(사전갱신)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제4조의4>
548	[별표 2]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0. 2. 28.>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법제13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나.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법제13조제1항제2호	면허취소			
다.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법 제13조제1항제3호	면허취소		
		면허취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범죄 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라) 「해사안전법」 마) 「수산업법」 바) 「내수면어업법」 사) 「수산자원관리법」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범죄 행위를 한 경우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라.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13조제1항제3호의 2	면허취소			
마.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제13조제1항제4호	면허취소			
바.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1)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	법제13조제	면허정지	면허취소	

📌 개정
2020.2.28개정

			사상(死傷)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을 죽게 하거나 사람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1항제6호	6개월				
			2)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법제13조제1항제6호	경고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법제13조제1항제7호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아.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법제13조제1항제8호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자.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제13조제1항제9호	경고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550	밑에서 4째 줄 ■ 개정 2020.2.28개정	<p> ■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행규칙 제13조> ①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책임운영자 및 강사 2.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강사 3.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 4. 검사대행자의 안전검사원 ② 해양경찰청장은 교육대상자별로 1년에 한 번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시험대행기관 : 21시간 이상 2. 안전교육 위탁기관 : 8시간 이상 3. 검사대행자 : 14시간 이상 ③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 외에 1년에 8시간 이하의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p>								

551		위에서 3째줄 ❑ 삭제	②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51		위에서 6째줄 ❑ 개정 삽입	구명조끼[구명슈트를 포함하며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 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말한다]를 착용하여야 하며, 워터슬레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551		밑에서 8째줄 [별표 7] <시행령제 15조> 수상레저 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 2020.2.25개정 2.28시행 개정 표 교체	<p>■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0. 2. 25.>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제15조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 2.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항해구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10해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해리) 이내의 연해구역(「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해하려는 경우 나.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항해구역을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시에 이동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 3.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 	

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4.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 나.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한 경우
 - 다. 기상특보 중 풍랑·호우·대설·강풍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용한 경우
5.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6.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7.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 된다.
8.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9.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0.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신구조문대비표
「수상레저안전법」

552~ 575		▶ 2020.11.27시행	교재 페이지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7332호, 2020. 5. 26., 일부개정] ▶ 2020.11.27시행
			552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생략) <신설>	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4	<신설>	제38조의2(임시운항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제1호의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조선소 등에서 건조·개조·수리 중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허가 목적 및 기간 내에서 운항하여야 한다. ④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570	<신 설>	제48조의2(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영, 안전 기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71	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574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3. (생략) <신 설> 2. ~ 5. (생략)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시험운전한 자 2. ~ 5. (현행과 같음)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p>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략)</p> <p>4. 제19조제1항 또는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574 <신설></p> <p>5. ~ 11의3. (생략)</p> <p>575 <신설></p>	<p>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9조제1항 또는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p> <p>5. ~ 11의3. (현행과 같음)</p> <p>12. 제48조의2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p>
555	밑에서 1째줄 ▶ 개정 수정	③ 정원을 산출할 때에는 해난구조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한 인원은 정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정원을 산출할 때에는 수난구조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한 인원은 정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557	표 밑에서 12째줄 ▶ 삽입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557	표 밑에서 11째줄 ▶ 삽입	<p>1. 시·도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명으로 한다.</p> <p>2.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p>	<p>1. ----- 1명 이상. -----</p> <p>----- 3명 이상 -----</p> <p>2.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p> <p>----- 1명 이상 -----</p>
560	위에서 7째줄 ▶ 개정	② 수상레저기구 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등록사항 중 -----

		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나 수상레저기구 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
561	위에서 10째 줄 ▶ 개정	수상레저기구	동력수상레저기구
566	밑에서 12 줄 ▶ ② 삽입	㉟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법 제39조> ①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등록 전에 해당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67	위에서 13째 줄 ▶ ②③④의 위치 및 번호 수정 및 개정	㉞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42조 1항>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기 3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2조> ③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 42조 2항> ④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42조 3항>	㉞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42조 1항>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 42조 2항> ③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 하려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기 3일전까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2조 1항> < 2020. 2. 28.> ④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 다시 개업하기 7일전까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이나 폐

				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42조 3항>
569		위에서 3째줄 ❑ 삽입	7.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569		밑에서 8째줄 ❑ 개정 신설 삽입	⑤ 배치하는 비상구조선은 인명구조에 적합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되, 비상구조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시행령 제37조 5항>	
570		위에서 9째줄 ❑ 뛰어쓰기 및 삽입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법 제45조 2항>	
573		위에서 8째줄 ❑ 개정 및 신설	해양경찰청장은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2. 25.> 1. 지방해양경찰청장: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도·감독 2. 해양경찰서장: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 다. 법 제5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59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585		위에서 10째줄 ❑ 2020.3.27. 개정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할 것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
594	유선 및 도선사업법	표에서 ❑ 수정	❑ 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시행령 제2조>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 2. 육지와 도서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	❑ 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시행령 제2조>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해안과 해안을 잇는 만의 형태를 갖춘 해역 2. 육지와 도서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
597		위에서 5째줄 ❑ 삽입	③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로부터 7일(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604		밑에서 1째줄	3. 유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 밖에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3. 유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 밖에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p>❑ 삽입</p>		<p>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이란 각각 길이 24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p>
628	<p>낙시관리 및 육성법</p>	<p>밑에서 4째줄</p> <p>❑ 수정</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낙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낙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p>
633		<p>밑에서 11째줄</p> <p>❑ 수정</p>	<p>① 법 제3조 제5호(공공용 수면) 또는 제6호(낙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의 낙시터업을</p>	<p>① 법 제3조 제5호(사유 수면) 또는 제6호(낙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의 낙시터업을</p>
638		<p>[별표4] 위</p> <p>❑ 신설삽입</p> <p>2020.2.21. 개정시행</p>	<p>4. 낙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p> <p>5. 낙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p> <p>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낙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 2020.2.21.부터 시행</p>	
639	<p>[별표4] 밑3째줄</p> <p>❑ 신설 삽입</p> <p>2020.2.21. 개정시행</p>	<p>②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하기 전 또는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에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p> <p>③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검사기간의 말일까지 「어선법」 다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시행규칙 제16조의4 제2항></p> <p>④ 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16조의4 제3항></p> <p>1. 최초로 낙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 해당 검사증서의 발급일</p>		

			<p>2. 검사기간 중에 검사를 받은 경우 : 종전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p> <p>3. 검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를 받은 경우 : 해당 검사증서의 발급일</p>
640	<p>밑에서 1째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설 삽입 2020.2.21. 개정시행</p>	<p>㉑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시행규칙 제18조의2></p> <p>① 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낚시어선에 승객을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와 육지 또는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사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2. 출항 신고 시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 <p>②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 및 같은 표에 따른 여객선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p>③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그 임무로 한다.</p>	
643	<p>위에서 5째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삭제</p>	<p>②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승선자명부)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p>	<p>②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승선자명부)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650	<p>밑에서 9째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삽입</p>	<p>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도구를 제조·수입·판매·보관하는 자,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수입·판매·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p>	<p>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도구를 제조·수입·판매·보관하는 자,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수입·판매·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어업감독공무원 포함)으로 하여금 다음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p>

			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50조 1항>	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50조 1항>
651		밑에서 3째줄 <div style="color: red;">▶ 개정삽입</div>	1.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우수낙시터의 지정 2.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3.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낙시터업자와 낙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1.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우수낙시터의 지정 2.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3.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낙시터업자와 낙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건전한 낙시문화의 조성 과 낙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 ▶ 2020.2.21.부터 시행
656	수산업법	<div style="color: red;">▶ 개정</div> 2020.8.28시행	1. "수산업"이란 어업·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1. "수산업"이란 어업· 양식업 ·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 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사업 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656		<div style="color: red;">▶ 개정</div> 2020.8.28시행	5. 기르는 어업 6. 외해 7.양식	<삭제>
657		위에서 4째줄 <div style="color: red;">▶ 삽입</div>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657		<div style="color: red;">▶ 개정</div> 2020.8.28시행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

				자를 포함한다.
657	☑ 개정 2020.8.28시행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61~ 663	☑ 개정 2020.8.28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해조류양식어업 ③ 패류양식어업 ④ 어류등 양식어업 ⑤ 복합양식어업 ⑦ 협동양식어업 ⑧ 외해양식어업 		<삭제>되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664	위에서 5째줄 2020.8.28시행	② 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법 제9조 2항>		<삭제>
664	위에서 7째줄 2020.8.28시행	③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법 제9조 3항>		<삭제>
664	밑에서 12째줄 2020.8.28시행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법 제9조 4항>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 ▶삭제
664	밑에서 9째줄 2020.8.28시행	①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시행령 제9조 1항>		및 협동양식어업 ▶삭제
664	밑에서 6째줄 2020.8.28시행	표에서 협동양식어업		<삭제>
665	위에서 3째줄 2020.8.28시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에만 해당한다)		<삭제>

665	위에서 5째줄 2020.8.28시행	4.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67	위에서 5째줄 ☑ 삽입	· 법 제13조(우선순위)제7항 각 호	· 법 제13조(우선순위)제7항 각 호 (면허 우선순위의 배제)
668	위에서 7째줄 2020.8.28시행	④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양식 ▶ 삭제
668	<삭제> 2020.8.28시행	9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법 제28조>	<삭제>
670	표에서	휴업의 연장	<삭제>
673	위에서 3째줄	·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673	위에서 5째줄	☑ 어업권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산증자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와 수산증자 살포를 끝낸 날 2.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수산증자를 뿌릴 필요는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 3.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수산증자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산증자 살포를 끝낸 날	<삭제>

678			㉔ 육상해수양식어업	<전체 삭제>
680	밑에서 1째줄 ▶ 삽입	10 허가어업의 취소 후 조치 행정관청은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 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1조 제5항>		
683	<전부 삭제> 2020.8.28시행	07 기르는 어업의 육성		
684	위에서 5째줄 2020.8.28시행	1.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이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1.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이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685	위에서 5째줄 2020.8.28시행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1.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685	위에서 12째줄	7.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7.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	

		2020.8.28시행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686		위에서 12째줄 2020.8.28시행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691		표에서 ☑ 칸 위치 수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 colspan="2">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설치목적</td> <td colspan="2">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td> </tr> <tr> <td rowspan="3">설치장소</td> <td>해양수산부</td> <td>중앙수산조정위원회</td> </tr> <tr> <td>시·도</td> <td>시·도수산조정위원회</td> </tr> <tr> <td>시·군·자치구</td> <td>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설치목적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설치장소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시·도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시·군·자치구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구 분	내 용																
설치목적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설치장소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시·도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시·군·자치구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691		위에서 11째줄 2020.8.28시행	4. 외해양식어업면허 신청자에 대한 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외해양식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또는 분쟁의 심의·조정	<삭제>													
691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691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양식산업발전법」 ▶ 삽입													
692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양식산업발전법」 ▶ 삽입													
692		밑에서 7째줄 ☑ 삽입	⑦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시행령 제73조 4항>														
693		위에서 1째줄 ☑ 개정2020.4.14.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양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734	해운법	위에서 7째줄 ☑ 삽입	2의2.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자	2의2. 법 19조 제2항 1의2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자													

752		밑에서 5째줄 다음 ☑ 신설 삽입	3의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785	어촌어항법	2.기능시설 10) 다음 ☑ 2020.3.24. 신설	11) 기능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용시설		
786		위에서 1째줄 ☑ 2020.3.24. 개정	<u>오니(汚泥)</u>	<u>오염 침전물</u>	
787		위에서 10째줄 ☑ 2020.3.24. 개정	<u>5년마다</u>	<u>10년마다</u>	
787		③ ④ ⑤ ☑ 2020.3.24.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u>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u>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u>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u>수립하였을 때에는</u>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u>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u>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u>수립한 때에는</u>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87	아래에서 1째줄 삽입 ☑ 2020.3.24. 신설	<신설>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		

			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95	표에서 2020.3.24. 신설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795	밑에서 5째줄 삽입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799	밑에서 3째줄 2020.3.24. 개정	착수	시착
800	위에서 3째줄 2020.3.24. 개정	공작물	인공구조물
809	위에서 18째줄 2020.4.30. 시행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② (생략) <신설>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815	항만운송사업법 위에서 1째줄 2020.3.13. 개정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생략) 2. 영 제2조제1호나목의 항만용역업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1. (생략) 2. 재직자 교육훈련: 제1호의 교육훈련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	제30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제2조제1호나목 중 줄잡이 - - - - - 3. 영 제2조제1호다목 중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②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2년 - -

			도 및 그 후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훈련	-----
817		<p>2020.4.30. 시행</p>	<p>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생략)</p> <p><신설></p> <p>2. (생략)</p> <p>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1의2. (생략)</p> <p>1의3.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사람</p>	<p>제30조(벌칙) -----</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사람,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p> <p>2. (현행과 같음)</p> <p>제32조(벌칙) -----</p> <p>1.1의2. (현행과 같음)</p> <p><삭제></p>
852	배타적경제수역비	<p>위에서 1째줄</p> <p>20 삭제</p>	<p>삭제</p>	
880		<p>밑에서 1째줄</p> <p>20 삽입</p>	<p>20 해양경찰법이 2020.2.21. 시행에 따라 해양경찰법 제4조로 이동됨</p>	
883	해양경비법	<p>위에서 6째줄</p> <p>20 수정</p>	<p>1. 연해수역</p>	<p>1. 연안수역</p>
		<p>밑에서 4째줄</p>	<p>2 과태료</p>	

890		❑ 삭제	▶ 삭제	
895	해양과학 조사법	위에서 13째줄 ❑ 개정	6.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를 부착할 것	6.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를 붙일 것
895		밑에서 3째줄 ❑ 개정	다만, 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만,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양경찰 필기, 고득점 합격을 원한다면?

선택하자, 해사법규



명품강의,
김성곤 교수님